

## '21년도 제2회 추경(안) 사업별 내역

올해년도 제2회 추경(안) 사업별 내역

\* 기존예산= 2021년 본예산 + 2021년 1회 추경, 예비비

(단위: 억 원)

구 분	2020년 최종예산 (A)	2021년			주요 내역
		기존예산* (B)	제2회 추경안 (C)	최종 예산안 (D=B+C)	
계	85,825	79,640	15,502	95,142	
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(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)	10,242	-	2,960	2,960	■ 저소득층 대상(296만명) 1명당 10만 원 현금 지급
생계급여	43,379	46,079	476	46,555	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 시행(2021년 10월, 49,280가구)
긴급복지	4,183	2,156	915	3,071	■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3분기까지 연장(~2021년 9월)
자활사업 (자활근로)	5,078	5,441	403	5,844	■ 기존 자활 근로 1.2만 명 예산 2개월 부족분 확보 ■ 자활 근로 참여인 원 3천 명 확대(5개월)
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	13,023	12,884	160	13,044	■ 공익활동형(1만개), 사회서비스형(1만 개) 확대(3개월), 전담인력(150명) 증원
보험정책사업관리 (재난지원금 지급지원)	-	-	42	42	■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건보공단 민원대응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
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(의료기관 손실보상)	9,423	12,241	9,211	21,452	■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지급
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(보건소 C19 대응인력 한시 지원)	-	123	147	270	■ 기존 보건소 C19 대응 한시 인력 516명 2개월 연장 ■ 보건소당(258곳) C19 대응력 5명 추가 지원(4개월)
C19 백신 임상 지원(R&D)	490	687	980	1,667	■ C19 백신 임상3상 비용 지원
제약산업 육성지원 (백신과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)	-	-	180	180	■ 백신과 원부자재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
제약산업 육성지원 (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)	6	30	28	58	■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백신 제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

구 분	2020년 최종예산 (A)	2021년			주요 내역
		기존예산* (B)	제2회 추경안 (C)	최종 예산안 (D=B+C)	

사업명	담당부서	부서장	담당자
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(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)	기초생활보장과	민영신 과장 (044-202-3051)	임동민 서기관 (044-202-3054)
생계급여	기초생활보장과	민영신 과장 (044-202-3051)	임동민 서기관 (044-202-3054)
긴급복지	기초생활보장과	민영신 과장 (044-202-3051)	전인수 사무관 (044-202-3058)
자활사업(자활근로)	자립지원과	김혜인 과장 (044-202-3070)	김혜지 사무관 (044-202-3073)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	노인지원과	주 철 과장 (044-202-3470)	김현아 사무관 (044-202-3477)
보험정책사업관리 (재난지원금 지급 지원)	보험정책과	진영주 과장 (044-202-2710)	이용채 사무관 (044-202-2706)
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(의료기관 손실보상)	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	신현두 팀장 (044-202-1890)	김동경 사무관 (044-202-1885)
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(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)	건강정책과	고형우 과장 (044-202-2810)	최지원 사무관 (044-202-2807)
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(R&D)	보건의료기술 개발과	현수엽 과장 (044-202-2870)	임중연 연구관 (044-202-2865)
제약산업 육성지원 (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)	보건산업진흥과	조귀훈 과장 (044-202-2960)	이기욱 사무관 (044-202-2970)
제약산업 육성지원 (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)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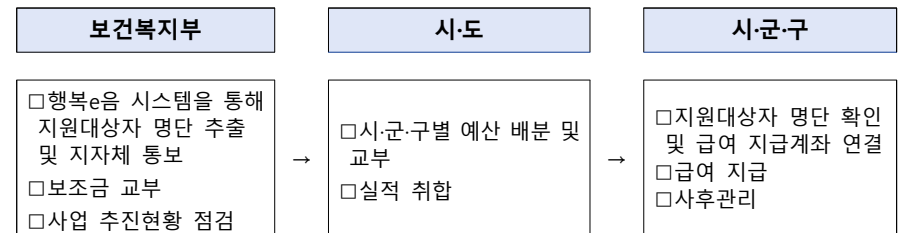
## ○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 및 소비여력 제고
- (지원방식) 자치단체경상보조(국비 100%)
- (사업기간) '21년도 단년도 한시사업

## ○ 지원 내용

- (주요내용)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침체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지원금 한시 지급
- (지원대상) 약 296만명 대상(중복제외)
  - 기초생활수급자(234만명, 전망치), 법정 차상위계층(59만명, '21.5월 기준), 한부모가족(34만명, '21.5월 기준, 차상위 이하는 31만명)
  - \*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대상
- (지원금액)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
- (추진체계) 기존 지자체 복지전달체계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활용을 통한 효과적 집행 추진

## &lt; 사업 추진 개요 &gt;



### 1. 긴급복지, 제1회 추경시 반영된 한시생계 지원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?

- 소비플러스 자금은 **법정 저소득층\***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**긴급복지, 한시생계 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함**
  - \*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  - \* 법정 차상위(본인부담경감, 자활, 우선돌봄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연금)
  - \* 양육비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

### 2.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?

- 제2회 추경을 통해 지급 예정인 **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함**

### 3.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?

-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의 급여계좌로 입금될 예정
  - ※ 계좌가 없는 가구의 경우 시군구에서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

#### ○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**최저생활 보장**
- (지원조건) 지자체 보조(서울 40~60%, 지방 70~90%), 직접수행
- (사업기간) '61년도부터(단년도 계속 사업)

#### ○ 지원 내용

- (주요내용) 빈곤 사각지대 해소,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**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**를 앞당겨 추진(당초 '22년 → '21.10월)
  - '21.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·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 (+5만 가구, 476억원)
  - ※ 고소득·고재산(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) 보유한 경우 제외
- (지원금액)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선정기준) 금액에서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

$$\text{생계급여액} = \text{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} (= \text{대상자 선정기준}) - \text{소득인정액}$$

- ('21년 본예산) 4,607,864백만원
- (수급자수) '20년 12월 말 기준 130.1만명, 92.4만 가구

#### <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수 >

(단위 : 가구, 명)

구 분	생계급여	
	가구수	수급자수
'16년	808,575	1,240,677
'17년	822,417	1,234,559
'18년	837,310	1,229,067
'19년	861,409	1,232,325
'20년	923,873	1,301,061

\* 연도말 기준, 수급 가구수는 시설수급자 제외

### 3

## 긴급복지 (한시완화기준 연장(~21.9월))

○ (사업목적) 실직, 휴·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·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
○ (지원대상)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가구

- (소득기준)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 75%	1,370,873	2,316,059	2,987,963	3,657,218	4,318,030	4,971,89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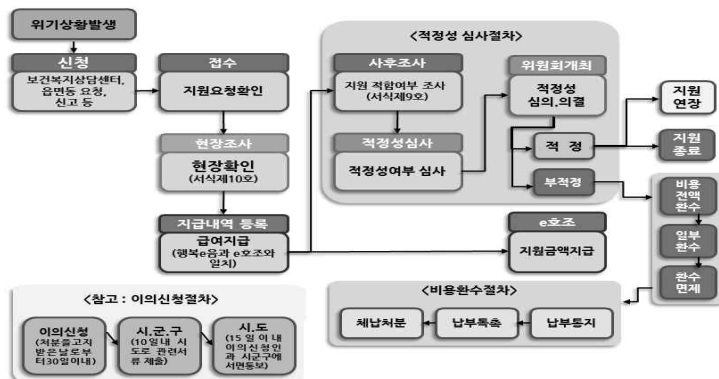
- (재산기준)

	대도시	중소도시	농어촌
당초	1억 8,800만원	1억 1,800만원	1억 1,000만원
한시 완화(~21.9.30.)	3억 5,000만원	2억원	1억 7,000만원

- (금융재산) 500만원 (생활준비금 공제: 4인가구 808만원) → 한시완화 1,231만원(4인 가구/21년기준)

○ (지원금액)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.7백만원,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, 주거지원 64.3만원 이내,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

○ (추진체계) 보건복지부(정책결정, 보조금교부) → 시도(보조금교부) → 시군구 (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) → 지원대상 가구(현금지급)



### 4

## 자활근로

○ (사업목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·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

○ (지원대상)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\* (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)

\*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미취업자로, 타 차상위 사업 대상자라도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

○ (선정방식) 신청 → 소득·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→ 자활근로 참여 대상 여부 확인 → 자활근로 참여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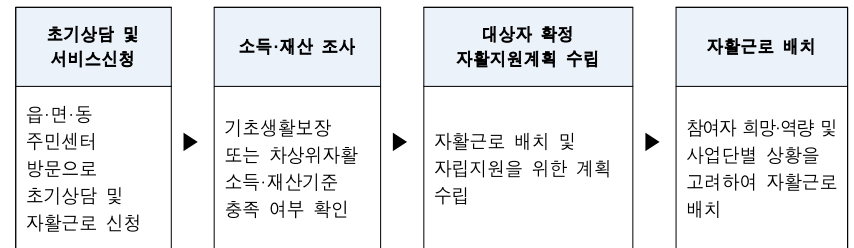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내용)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자활근로 참여\* 및 참여에 따른 급여 지원

\* (참여업무 예시) 임가공, 집수리, 세탁, 청소, 음식물 제조, 재활용 등

- (근로조건) 1일 8시간, 주5일 근무 원칙(사업단 유형별로 상이)

- (급여) 유형별 5,848원~7,119원까지 상이(일 29,240~56,950원)

○ (신청 방법)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

※ 취업 역량 등 고려하여 취업지원제도 연계가 적합한 경우 해당 제도로 연계·안내될 수 있음

※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 정원 포화로 참여가 어렵거나 원하는 사업단에 배치되기 어려울 수 있음

## 5

##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

- (사업목적)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관계 증진,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여
- (사업개요)
  - (공익활동형)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
  - (사회서비스형) 노인의 전문성 및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(지역사회 돌봄, 안전 관련 등)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
- (지원대상)
  - (공익활동형)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선발기준표\*에 따른 고득점자
    - \* 소득인정액(60점), 참여경력(5점), 세대구성(5점), 활동역량(30점)
  - (사회서비스형) 만 65세 이상(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참여 가능) 중 선발기준표\*에 따른 고득점자
    - \* 활동역량(40점), 필요도(20점), 사무·인성·대인관계 역량 중 택 2(각 20점), 유관자격증(가점 15점)
- (지원금액) <sup>△</sup>공익활동형 : 월 27만원 (월 30일 근무 기준), <sup>△</sup>사회서비스형 : 월 59.4만원 (월 60시간 근무 기준,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별도)
- (추진체계) 복지부 → 시·도 → 시·군·구 → 수행기관\*
  - \*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 적격성 심사 후 수행기관(시니어클럽, 노인복지관 등) 사업 규모 배정
- (추진일정) 추경 신규 사업량 배정(복지부→지자체 → 수행기관) (7월중),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구, 시·도 심사(8월중), 참여자 선발 및 신규사업 추진(9월~)

## 6

##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

- (사업개요)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건보공단 인력 지원, 보험료 조회서비스 개발 및 서버(대량접속제한 솔루션 설치) 보강
- 지원내용
  - 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, 고객센터 및 지사
  - (지원내용) 4,211백만원
  - (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지원) 현장대응여건 확보를 위해 단기 상담인력 확보, 상담사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 시행 (+1,707백만원)
    - (단기 상담인력 인건비) 1인당 332만원(7주(1주당 47.5만원), 주휴수당, 4대보험 포함), 372명 채용 예정 → 총 1,237백만원
    - (사무기기 렌탈, 교육비 등) 470백만원
  - (전산망 정비) 공단 홈페이지·모바일에 과부하가 전망되므로, 대량접속제한 솔루션 설치·운영(+2,504백만원)
- 집행계획
  - (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지원) 현장대응여건 확보를 위해 단기 상담인력 확보 및 조기 채용, 상담사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 시행
  - (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CPU증설) 하드웨어(서버·스토리지) 도입, 홈페이지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(시스템·업무지원용·보안용) 도입

7

의료기관 손실보상

- (사업목적)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·지자체의 지시\*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, 약국,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을 보상

\*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·운영, 감염병 환자 진료·격리 및 확진자 발생·경유에 따른 폐쇄·정지, 오염장소 소독 등

- (지원대상)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,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·일반 영업장 등 대상으로 기회비용(진료비·영업 손실)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

- (지원절차)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

- (지급현황) '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1,604억원 지급

- (치료의료기관·선별진료소) 총 15차, 2조 678억원 지급

(단위: 개소, 억원)

구분	합계*	치료의료기관							폐쇄 업무 정지	선별 진료소
		소계	감염병 전담병원	거점 전담병원	국가 지정 입원치료	중증환자 입원치료	중증환자 전담치료	기타 치료의료		
기관수	400	187	99	11	31	93	75	9	182	31
금액	20,678	19,131	12,178	2,295	5,821	10,631	10,366	78	1,517	31

\*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거,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

- (폐쇄·소독조치기관) 총 10차, 926억원 지급

(단위: 건, 백만원)

구분	합계	의료기관	약국	일반영업장	사회복지시설
건수	24,265	3,178	2,400	18,580	107
금액	92,586	81,099	2,777	8,173	537

8

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

- (사업목적)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 지원

\* 수행업무 : 선별진료소 지원, 검체 채취,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

- (지원대상) 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1,806명\* 지원 (국비 100% 보조)

- (지원단가) 238만원을 기본으로 하나, 채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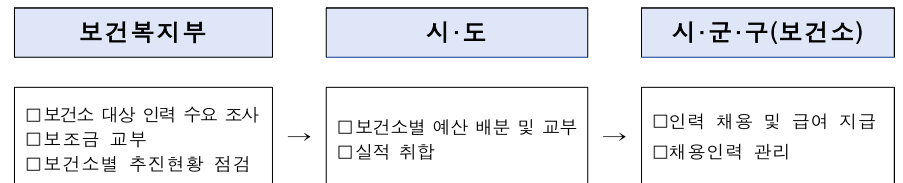
\*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한시 인력 516명(=258개 보건소당 2명) 2개월 연장 및 신규인력 1,290명(=258개 보건소당 5명씩) 4개월 지원

- (채용기준) 간호사,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

- (업무내용) 선별진료소 지원, 예방접종 지원, 역학조사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및 업무배치

- 보건소별 필요 업무, 직군 등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

- (지원절차) 보건복지부 → 시·도 → 시·군·구(보건소)



- (사업목적)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및 종식을 위한 **국내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확보**
- (지원내용·대상)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1·2상 개발 중인 기업에 대해 **임상3상** 등 비용 지원
  - 임상3상 1과제 × 단가 900억 원 × 국고지원 50%\* = 450억원
  - 임상3상 2과제 × 단가 900억 원 × 국고지원 75%\* = 1,350억원
  - 사업단 운영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7억원
- \* (국고지원비율) 대기업 50%, 중소기업 75% (근거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)
- \* '20년 추경예산 집행잔액(140억) 및 '21년 본예산 687억원의 총 827억원을 포함하여 지원 예정
- (지원조건) 출연 100% (기업 참여 시 매칭)
- (사업수행주체) 한국보건산업진흥원(전문기관), (재)국가신약개발재단  
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신약개발사업단
- (지원방식) 사업단에서 **과제공모** 실시 및 응모과제 **접수, 선정평가**를 통해 **과제선정** 및 **협약 체결** 후 연구개발비 지급
- (추진일정) 사업단에서 **격월**마다 **과제공모**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

- (사업목적) 백신 및 원부자재 **생산역량을 확충**하고 **백신 공급확대** 및 **글로벌 백신허브**로의 도약기반 마련
- (지원대상) **백신 생산 관련 계약** 또는 **백신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** 등을 체결한 기업
- (지원내용) 기업당 백신·원부자재 생산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시설·장비비 **최대 30억원** 지원
  - (지원조건) 지원금액의 100% 이상 기업 매칭(자부담)
- (추진체계) **한국보건산업진흥원**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, 공고, 평가, 지원 등을 통해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
- (추진일정) 세부 사업계획 수립, 사업공고(7월), 선정평가(8월), 지원(9월~)

- (사업목적) NIBRT 교육과정\*을 활용하여 백신개발 및 제조를 위한 이론교육 및 제조공정 실무 교육으로 백신 전문인력 양성

\* 아일랜드 NIBRT(국립 바이오공정 연구소,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& Training)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 교육·훈련 프로그램

- (지원대상) 인천시(→연세대)

- (교육대상) 기업 종사자, 바이오 공정 관련 취업희망자 등

- (지원내용) 백신 제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·장비 구축비 28억

\* 인천시 12억 매칭(30%)

- (추진체계) 인천시(시설장비 구축), 연세대(프로그램 운영, 시설투자 일부), 보건산업진흥원(NIBRT 사업관리)

- (추진일정) 교육과정 기획(7월), 실습장 리모델링, 이론·실습 교육(7월~)